

## 5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

복지정책과장 : 하영태 ☎2133-7310 복지정책팀장 : 송수성 ☎7312 담당 : 김미진 ☎7317

### □ 난방비 특별지원 개요

- 지원대상 :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시설 23개 유형, 764개소 (붙임-대상시설 현황)
- 지원기준 : 난방비 3개월분 지원하되,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
  - 월 최저 1백만원(1,500㎡ 미만 이용시설)에서 최대 10백만원(6,500㎡ 이상 이용시설)
  - 장애인 시설 7종은 이용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 지원

#### ▶ 정액 지원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

- (월 300천원) 공동생활가정/주간보호시설/수어통역센터/보조기기센터/피해장애인 쉼터
- (월 500천원) 단기거주시설
-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(월 600천원), 보호직업장(월 500천원), 직업적응훈련시설(월 400천원)

### □ 예비비 사용금액 및 사유

- 관련근거
  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,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예비비의 사용)
- 사용금액 : 2,559,300천원(764개소)
  -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, 581백만원, 어르신 시설(복지관, 요양시설 등) 59개소 548백만원
  - 장애인시설(복지관, 직업재활시설 등) 565개소, 1,134백만원, 노숙인시설 41개소 297백만원
- 사 유 : 예기치 못한 기록적 한파 및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충분한 난방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하여 난방비 지원

### □ 추진결과

- 자치구 및 대상시설 특별지원 난방비 교부 : '23년 2월

**붙임**

**복지정책실 소관 대상시설 현황**

(단위 : 개소, 천원)

부서명	시설유형		개소 수	총 소요예산	비고
23개 유형 합계			764	2,559,300	
안심돌봄복지과	종합사회복지관	이용	99	580,500	지방이양시설
어르신복지과	노인주거복지(양로시설)	생활	6	54,000	지방이양시설
	노인여가복지(노인복지관)	이용	25	211,500	지방이양시설
	노인일자리지원기관	이용	19	57,000	지방이양시설
	노인요양시설	생활	9	225,000	
장애인복지정책과	장애인단기거주시설	생활	39	58,500	지방이양시설
	장애인공동생활가정	생활	163	146,700	지방이양시설
	장애인보조기기센터	이용	4	3,600	
	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	이용	24	72,000	
	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	이용	1	3,000	
	인권침해 장애인 쉼터	생활	1	900	
장애인자립지원과	장애인직업재활시설	이용	139	209,400	지방이양시설
	장애인복지관	이용	50	390,000	지방이양시설
	장애인의료재활시설	이용	6	52,500	지방이양시설
	장애인체육시설	이용	7	79,500	
	장애인주간보호시설	이용	109	98,100	지방이양시설
	수어통역센터	이용	22	20,100	
자활지원과	노숙인자활시설	생활	20	129,000	지방이양시설
	노숙인재활시설	생활	7	60,000	지방이양시설
	노숙인요양시설	생활	2	39,000	지방이양시설
	노숙인종합지원센터	이용	3	30,000	지방이양시설
	노숙인일시보호시설	이용	4	24,000	지방이양시설
	쪽방상담소	이용	5	15,000	